

企業認識 패러다임의 轉換

— 자본주의 체제 원리와의 관련하에

金 元 銖

《目 次》

- | | |
|--------------------|----------------------|
| I. 머리말 | Ⅲ.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재검토 |
| Ⅱ. 자본주의 체제 원리의 재검토 | 1.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제유형 |
| 1. 자유 | 2. 대체적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모색 |
| 2. 영리 | Ⅳ. 맺는 말 |
| 3. 사유(사적소유) | |

I. 머리말

현대는 조직체의 시대(age of organization)이며 조직체의 지배적인 형태는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 또는 기업조직체이다. 이는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인 국민을 포함하는 인류의 삶의 바탕이 되는 가치의 생산기능을 수행하면서 성장·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가(경영자 포함)의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것이며 그것은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요인 중 특히 경제체제⁽¹⁾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종래 경영학연구상으로는 연구대상인 기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체제관련적인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cf[36][35] pp.345-346).

첫째 미국경영학의 주류인 경영관리론의 연구상으로는 내부지향적 관리가 중심이 되어 외부지향적인 인식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41] pp.2-3).

둘째 독일경영학의 주류인 경영경제학상으로는 그것이 私企業이 수익성의 향상을 목적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1) 사회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사회체제일 수도 있다.

으로 하는 私經濟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경제체제는 所與의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경제학이 그 이론전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제체제란 바로 국민경제적 이익과 사경제적 이익이 일치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에 입각하는 자유교환경제이었으며 그 경제질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경영계획의 원칙이었기 때문이었다([8] p.67).

이처럼 종래의 경영학 연구상으로 경제체제로서는 자본주의는 所與(a given)의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었고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경영학 연구의 방향이 誤導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나 경영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企業인식 패러다임의 변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영학 연구상으로 기업은 특수역사범주에 속하는 영리기업으로서의 자본조직체로 先驗的으로 인식하고 이론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미시경제분석은 現狀(status quo)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cf. [6] p.13). 그것은 現狀肯定的인 귀납론적 연구에 입각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 글은 오늘날의 경영학 그 연구상 전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원리의 내용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企業概念의 定立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체제란 인류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 내지 경제운영의 틀(framework)인데 이에 <표 1>에서 보듯이 세 가지가 있으며 자유경제체제 또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해되는 자본주의체제는 자유·영리·사유의 3가지 체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은 대략 3세기부터 결핍이나 기근, 희생이라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1] p.15). 그리하여 성장을 거듭한 자본주의는 20세기 말엽에 체제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ibid, pp.13-14).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 또는 이상적인 체제이었기 때문

<표 1> 대체적 경제체제의 원리의 비교

체 제	행동준거	행동동인	소유양식
자본주의(자유경제)	자유	영리	사유
자본주의(통제경제)	지도	공익우선	사유인정
사회주의(계획경제)	명령	공익	공유(公有)

(자료: [36][35] p.347)

이 아니라 흔히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주의로 불리워지는 변칙적인 국가관리 시장과 민간경제주체의 이윤획득을 금지하여 국가가 독점적 생산자가 되어 있는 변칙적인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파탄되어 일어난 것이었다([32] p.24). 자본주의 경제는 역사상 종래 이룩하지 못하였던 경제 번영을 초래하였으나 그 기반이 되었던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 내재적 모순이 표출되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의 논리인 도덕과 규율 보다는 개인의 논리인 자유와 평등이 너무 커져서 양자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지고 기업이나 집단의 기능보다 자기의 자유와 평등이 더 중요시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개인주의 문화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개인>으로 하는 사회구성원리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는 신분제도를 없앴고 평등한 개인의 자기실현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규제(자유)의 정신, 윤리가 뒷받침이 되는 한도내에서 근대화에 유효하였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주장의 철자화에 의해 자기의외의 제약을 모두 배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회질서는 문란하기 시작한다. 자기결정, 무한한 자기 가능성의 추구는 사회의 발전이나 機能의 동기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安樂의 동기를 우선시키게 한다. 판단은 대다수의 경우 쾌락주의에 의존하며 자기의 이상화는 욕구의 무한한 추구 끝에 허무주의를 발견하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기도 한다 (cf [28][29] pp.263-264).

첫째, 이러한 현상은 신앙심의 저하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가능성만을 믿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규제 없는 정신의 방황이 비롯되고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화시켜 주었던 규범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주의 문화는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의 쾌락과 미래에의 신앙만을 갖는 경향을 생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초월적인 윤리를 잃고 사회도덕이 문란하게 된다. 공동체원리에 의한 전통은 거부되고 공통성, 공감대가 없는 각자의 가치관만이 중시된다. 이는 쾌락주의로 이어지고 인간관계의 따뜻한 접촉을 잃게 한다.

셋째, 이렇게 되면 경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경제력이 저하한다. 무한의 능률성과 합리성의 추구에서 개인은 도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능력과 역할만을 존중하는 시스템에 협력하지 않게 되고 요구의 확대와 쾌락의 추구에 의해 경제질서가 문란되고 생산성이 저하하여 산업의 공동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체제는 비록 체제적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내재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cf·6)(9) pp.14~18).

- ① 소득불평등
- ② 소외
- ③ 환경파괴
- ④ 제국주의
- ⑤ 인종주의
- ⑥ 여성의 종속화

따라서 이에 대체될 대안체제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Ⅱ. 자본주의체제원리의 재검토

그러면 사회질서의 형성틀인 자본주의체제는 어떤 형성원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이에크는 자본주의를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11) p.58)라 하였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본(또는 그 소유자)이 우대되는 사회체제 내지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36)(35) p.349).

그러면 자본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은 우대되어야만 하는가?

자본이란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이며 그것은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여 줄 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재화형태의 실물자본이나 화폐가치 형태의 화폐자본이다. 화폐자본은 바로 자본의 축적으로 불리어지는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轉化된 것((14) p.634)인데 이는 “수익이 자본으로 전환(*conversion of revenue into capital*)”((15) p.319)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은 바로 노동의 성과로서 창출 분배된 잉여가치가 축적·투자되어 변환된 노동성과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과정은 바로 잉여가치의 창출과 一體가 되어있기 때문이다((14) p.220).

이렇게 본다면 자본이란 과거의 인간노동 성과의 축적된 형태이므로 통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노동이 신성하다면 노동의 성과로서의 잉여가치가 전환된 형태인 자본도 신성한 수밖에 없다”는 推論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본을 우대하는 경제체제가 필요한 것일까?

앞서 본 바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이 결핍이나 기근, 희생이라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우리들의 삶을 위한 생산력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노동성과의 축적 즉 저축과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에도 우리들의 사회·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기업(회사)의 생산력(productive potential)의 영속화 그 자체가 가치이다. 이러한 생산력의 지속은 기업경영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책임”([17] p.17)이라는 주장이 있듯이 가치의 생산의 지속적 확대는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체제원리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하 3가지 체제원리의 각각의 내용을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자유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경제체제라 하듯이 이의 첫째의 체제원리는 자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책임지는 선택이며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않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는가? 다른 신념을 가지는가? 하는 양자택일 선택의 자유이다([25] p.139).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란 행동의 자유를 뜻하는데 이는 인간의 욕구의 충족 행위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서 보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하게 될지도 모를 잠재적인 선택이나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소극적자유(negative freedom)”([26] pp.29-30)이다. 그러나 인간 욕구의 충족행위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방임될 때 서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행동의 자유가 조화를 가져다준다고 보는 낙관론도 없지 않은데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담 스미드의 견해이다. 그는 인간이 이기심에 따라 극대만족을 추구하여 행동하면 가격기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이익도 증대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자유로이 이윤극대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일까? 사실 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처럼 자유경쟁=완전경쟁 조건이 관철된다면 소유자의 이윤극대 지향적 행동은 동시에 기타의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25] p.133).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고전파경제학이 전제한 경제주체인 인간은 이성에 따라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이었다. 이들 경제인이 자기합리성을 전제로 자기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동물(economic animal)로 불리워지는 물윤리적 행동을 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전제(faunal premisc)의整合성을 전제로 하는 논리적 의사결정에만 좋아하고 가치전제(vane premiae)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은 하지 않게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담 스미드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이기적 동기의 윤리화의 가능성을 사회의 중심적인 제3자의 동감을 얻어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同感의 원리(principle of sympathy⁽²⁾)를 전제로 이기심에 입각하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정당화의 근거로 보았고 이의 제도적 장치가 자유·공정경쟁의 시장기구로 보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감(공명)이란 狀況의 想念의 轉換(imagery change of situation)으로서 그것은 타인이 한 행위상황에 대한 이해·동감 내지 共鳴 나아가서는 합의에 이르는 감정이입(empathy)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행동의 자유는 사회의 용인 내지 합의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2. 영리

일찌기 독일 경영학의 주류인 경영경제학이 국민 경제학자로부터 받게 된 이윤추구학(profitslehre)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고자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하듯이 자본주의 체제하의 기업은 영리경제단위로 인식되어 이윤극대화 원리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리추구라는 기업이 행위는 이론적으로 생산자 선택의 이론으로 불리워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42] p.29 註 10).

1) 최소비용결합-일정량의 재화의 생산을 위해 총생산비를 극소화하기 위한 생산요소의 결합의 모색단계

2) 이윤극대화-실현한 최소생산비에 대응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및 생산량의 결정단계

이처럼 자본주의체제는 기업가적 행위의 유인으로서 私的이윤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리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리원리에 따른 이윤추구가 사회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cf [16] p.67).

- ① 경제주체로부터의 가격의 독립
- ② 재화의 완전한 동질성(대체성)
- ③ 경제주체의 비우월성(대등성)
- ④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
- ⑤ 경제주체의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전망(시장의 투명성)

(2) 共感 또는 共鳴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이념을 바탕으로 이윤극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원리의 실현을 자본주의의 체제원리로서 기회로 수용되는 까닭은 私經濟的이익 → 사회적 이익 → 사회복지·문화가치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본 바와 같은 자본주의의 사회성과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는 않는 것이다.

사실 영리원리에 따라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있는데([2] p.487) 이는 이에 입각하는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윤극대화가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리원리에 대한 수정·비판론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cf [20-23] p.40).

3. 사적소유(사유)

자본주의의 기초는 바로 사유재산권에 있는데 재산권이란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특정대상을 사용(처분)하는 권리로서 특정대상에 대한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cf [27] pp.245-250). 따라서 맑스(K. Marx)가 말했듯이 소유관계란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이며([44] p.185), 이는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13] p.257).

이와 같은 제도적장치가 있었으므로 저축자=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자신이 축적한 노동성과를 투자하여 고전적 기업의 소유자가 되었고([37] p.28). 그리하여 개인기업이 성립되었다([33] p.54). 그러나 기업의 발달에 따른 규모의 확대는 개인적 관계를 넘어선 거액의 자본을 집중하기 위해 공동기업인 주식회사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른다([37]. p.37). 나아가 주식회사가 제도화되면 자본의 소유자 즉 주주는 투자자=경영자가 아닌 단순한 자금제공자로서 외부화되고 생산수단이나 생산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에서 분리된다([37] pp.27-28).

그런데 종래 기업소유관계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은 사적 소유-사회적 소유패러다임이었으나 오늘날엔 개인소유-기관소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는데(cf [38] [40] p.34) 이는 앞서 본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 기업으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업의 소유자가 개인으로부터 주주로 이행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코트는 회사간 주식소유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오늘날 현대의 거대기업의 소유자는 다른 여러 기업이며 그 기업은 또한 다른 여러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자기의」 회사를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던 個人的 占有시스템

은 비개인적 점유시스템에 대체되고 있다고 하고 비개인적 점유시스템에서의 기업은 기업 간의 연결의 네트워크에 고유한 제약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18][22] p.92)고 한다.

그는 오늘날의 기업의 사회적 실패가 법률적 모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주식회사란 法的 實在로서 구성된 사업조직체이며 그 활동을 위해 주식 자본을 제공한 멤버(=주주)와 회사의 이름아래 행동하는 임원(offic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회사(company)는 보통 하나 이상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회사는 보다 큰 회사집단의 한 멤버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회사가 서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Enterprise)」 또는 企業聯携(Concern)⁽³⁾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19] pp.2-3)고 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볼 때 그는 회사와 기업의 개념상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도 바로 소유를 전제로 한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

Ⅲ. 기업인식패러다임의 재검토

1. 기업인식패러다임의 제유형

그러면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은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 인식되어야만 할 것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스코트는 법률형태로서의 회사와 기업 또한 단일기업과 기업집단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인식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표 2〉 기업인식패러다임의 유형

1. 企業道具說
① 자본조직체관(= 기업소유자설)
② 노동조직체관
2. 企業主體說
① 企業 ⁽⁴⁾ 공동체관
② 기업동료체관
③ 기업協成體관
④ 협동적생산실체관

(자료: [21] pp.64-65)

(3) Concern을 會社群으로 번역하기도 한다([22] p.90.

(4) 독일경영경제학상으로는 기업대신에 경영(Betrieb)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경영학상으로 적용되어 온 기업관 즉 기업인식패러다임에 따르면 크게 <표 2>와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표 2>의 기업도구설에 속하는 자본조직체패러다임은 신고전파경제학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유일의 행동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경제단위로 파악하고 제도적인 여러 조건과는 관련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는 공통의 성격과 행동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31] pp.3-4). 이 패러다임은 독일의 경영경제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 입각하는 기업인식은 현실사회의 기업의 實狀을 올바르게 파악하지는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이미 조직체 중심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재산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제관념 속에 살고 있어서 조직체 중심의 윤리를 포함하는 제관념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기반은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이에相應하는 사상, 신조, 이상, 윤리, 가치관은 성숙되지 못하고 낡은 사회기반에 대응하여 성립되었던 제관념이 그대로 남아 이에 의해 새로운 기반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변화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43] p.59)고 비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체적 기업인식 패러다임의 모색

그러면 현대기업은 어떻게 인식하여야만 할 것인가?

기업이란 어떤 경제체제 하에 있건 인간의 재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기본 단위이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광의)은 다수의 인간의 협동 시스템 즉 조직체의 산물이며 다수의 종업원이 거기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場(field)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 실패는 실업, 금융혼란, 기존의 거래 경로의 파괴, 소비자의 구매불능, 사회코스트의 배제, 경제적 불안이나 자원의 적절한 유통기구의 마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기관 또는 사회적제도체(social institution)로 인식되며 거기서는 특정 이해 관계 집단의 이익보다는 이해 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영구존속체(going concern)로서의 기업의 유지·존속·성장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기업 특히 대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능수행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12] p.62).

- ① 경쟁을 매개로 한 相互給付에 의한 절약적인 자원의 이용과 최적의 사회적 공헌

② 개인적 노동과 사회적 생활의 의미 부여

③ 직업적·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의 보장과 이와 관련되는 개인적 正體性(identity)⁽⁵⁾의 확립과 안전성의 보장

④ 환경에 대한 급부, 서비스, 급부제산의 제도적, 실체적 안정성

⑤ 경제적, 인적, 문화적 의미에서의 국제적 협동과 교류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와 관련된 전략적·관리적 의 사결정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⁶⁾가 올바른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려면 경영자는 마땅히 기업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인식되어야만 할 것인가?

종래 일반적으로는 자본조직체관에 입각하여 기업을 자본소유자와 같이 보는 企業所有者說이 지배적이었다.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추구를 존속·발전의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기업의 생산잠재력 (productive potential)의 영속화 자체가 가치이다. 이 능력의 지속은 기업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24], p.17). 따라서 기업가(경영자 포함)에게 있어 자유로운 활동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타율적인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기업가는 이윤극대화보다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폭넓은 책임을 지면서 높은 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사회 시스템에서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ditto).

이처럼 전통적인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은 기업소유자설에 의해 자본소유자의 소유물로 보기 마련이었고 증권자본주의하에서도 자본가인 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부분적 소유자로 믿고 그렇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견해는 法規認知說이라는 법학상의 기업인식패러다임을 따르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기업이란 설립 멤버 및 참가자에 의해 창설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이란 법률이 창출한 존재이므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법규조물주설이라는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이 설은 기업이란 결국 국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또한 국가와 법은 사회가 창출한 것이므로 기업 또한 사회가 창출한 것이 된다. 기업은 사회의 결정, 행위의 所産으로서 특별

(5) 자기존재증명이라고도 한다.

(6) 관리자 포함.

한 속성·특권·의무를 가지며 사회의 이익을 위해 창출되는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公共善에 反하는 것이 되면 그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내부변경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소멸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59], p.188).

1897년 미국에서의 살로몬 대 살로몬 회사(Salomon vs Salomon and Co.)사건의 판결에서는, 기업은 그 구성원(member)과는 다른 것이라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는 1947년에 쇼트 대 재무성 심의관(Short vs. Treasury Commissioners) 사건에서 요약되어 판사인 에버셰드 경(Lord Justice Evershed)이 “주주는 법률상 기업의 부분적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보강되었다. “기업 즉 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實體이다. 기업이 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은 스웨덴·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법률에도 합치한다”([3], p.72)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주주의 기업에 대한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흔히 소유로 번역되는 own이라는 용어의 원래의 의미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친 중세기의 영어에서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용어는 own이 아니라 owe였다—오늘날 우리가 소유자의 의미로 쓰는 owner는 ower였다. 주주가 회사에 의존하고(owe)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실로 그 구성부분에 의존하고(owe)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책임은—그것이 소유(owns)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의존하고(owes) 있는 것은—그 모든 이해관계자에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ibid.,], p.72). 단순히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의무가 널리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 법규인지는 기업이란 자유로이 결성된 집단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존재로서 이러한 기업의 목적은 직접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닌데 대해 법규조물주설에서는 기업 그 자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도 사회는 기업에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 p.189). 이러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윤리문제에 한층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13], p.28).

이와 같은 법률상의 기업인식 패러다임 중 법규조물주설은 바로 기업을 사회로부터 생산수단인 자본을 수탁받은 社會的 機關 내지 制度體(social institution)로 보는 제도론적인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은 당연히 윤리적 기업으로 탈바꿈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소유자 내지 주주이익을 절대시하는 이윤극대화패러다임에 대체되는 기업인식 패러다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34], pp.242-243).

① 인권비침해설-회피할 수 있는 위하는 끼치지 않고 또한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이윤을 추구한다.

② 사회적 선행설-이윤을 추구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옳은 행동을 하도록 또는 사회적 제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③ 소비자지향설-생명을 유지하고 고착화시켜주는(life-sustaining and enhancing)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주력한다.

④ 이해관계자이익극대화설-소유자(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들 代替的인 여러 기업인식패러다임은 모두 기업을 단순히 소유자이익을 위한 이윤창출기계(profit creating machine)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업인식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의 소유양식이 개인소유로부터 기관소유로 이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자지배가 일반화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관소유의 주체인 기관은 무엇이며 기관소유의 증대는 개인소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관(institution)⁽⁷⁾은 조직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조직체 목적이 제개인의 생존에 불가결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직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한 사회적 제약하에 있으면서 장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사회의 결정적인 기관은 기업이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대, 학교, 병원 등등,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로 불리는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재단 등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관소유는 기관투자가로 불리는 기관에 의한 소유만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한 소유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38)[40] p.36).

기관소유와 개인소유의 차이는 소유주체가 인간이나 아니냐에 있다. 개인은 인간이고 기관은 인간이 아니나 인간을 구성요소로 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그 자체는 인간이 아니다. 기관(=조직체)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간이 인간을 조직화하여 형성한 사회구성체이다.

그러면 기관소유는 법인소유와는 어떻게 다른가? 소유의 주체로서 등장한 기관으로 법인이 아닌 것이 없고 법인으로서 기관이 아닌 것은 없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지만 법에

(7) 경영학상 이를 制度體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제도체소유라 할 수도 있다.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이 주어진 人이다. 그러므로 法人이라 한다. 이에 대해 진짜의 인간은 자연인으로 불리워진다. 법인이란 용어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간주하여 다루는 용어로서 인간처럼 행위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소유와 기관소유의 차이는 인간이 소유주체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것이 소유주체인가 하에서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이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구별을 은폐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38][49], p.39).

그러면 개인소유와 기관소유하에서의 경영자의 행동양식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개인이 소유주체로서 어떤 물적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수익을 얻거나 혹은 처분할 수 있다. 어쨌든 소유경영자는 소유의 객체를 자유로이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소유객체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쉽다. 개인이 소유주체인 개인기업 또는 복수의 개인이 소유주체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엔 바로 이러한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되면 상황은 바뀐다. 주주가 소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주식이며 인간과 생산수단이 합체된 회사 그 자체는 아니다. 주주가 소유하는 주권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서류열람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권리증권에 지나지 않는다. 주주인 개인의 의사결정 하에 있는 것은 주식이 보증하는 권리의 행사와 주권 그 자체의 처분 즉 매각·양도이다. 그러나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는 거기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는 회사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주주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만이 지배자가 될 수 있을 따름이며 중소 주주는 그렇지 않다. 지배의 욕을 가지는 소수의 대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좌우할 만큼의 주식을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하고 다수의 중소주주는 의결권을 포기하고 그들이 출자한 자본은 대주주가 출자한 자본과 합쳐져서 대주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대주주인 개인은 그 스스로가 경영자가 되어 회사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의 위임에 의해 그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는 인간을 그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선임할 수도 있다. 그는 자본가로서 자본의 논리를 자신의 논리로 삼아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얻고 그것을 챙긴다. 그는 자본가로서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행동이외에 주식회사의 특성을 악용하여 주가조작 등을 통해 거기에서 利得을 얻고자 하며 그 이외의 여러가지 不當한 利得을 얻을 것이다.⁽⁸⁾([38][40] pp.39-40).

(8) 모든 대주주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기관소유가 일반화되어 기관이 대주주가 되면 이들 기관대주주는 개인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가와 지배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인가? 기관은 개인과 달리 특정의 목적을 가진 행위주체이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 제약이課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소유주체인 기관도 그 기관이 가진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소유하며 그 범위내에서 소유객체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소유자가 사회적 존재인 기관에 빌붙어 거기에서 이윤을 가능한 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소유주체인 기관이 개인대주주가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사회는 방임하지 않는다. 개인소유의 기업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형성하려면 주식회사는 개인과 기관을 소유주체로서 구별하지 않으므로 만들 수는 있으나 사회는 그와 같은 존재를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들 각 기관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기관이냐에 따라 소유객체인 기업과의 관계는 달라진다. 기업이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유지·존속·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며 소유된 기업은 이러한 경우 완전히 종속·지배된다. 이때 동종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무제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보험회사·연금·기금은 거대한 소유주체인데 이들은 안전·유리한 배당의 획득을 목적으로 소유하며 지배성향은 약하다. 은행은 자신의 업무인 대출을 안전·유리하게 하기 위해 소유자로서 주식을 보유한다. 주식은 쉽게 매출할 수 있으나 대출금은 회사가 부진하면 회수하기 어렵다. 회사운영이 순조로우면 관여할 필요는 없으나 부진이 계속되면 경영자의 경질 기타에 관여하게 된다((38)[40], pp.41-42).

그러면 기관소유가 일반화되어 기관이 대주주로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서의 의사결정은 개인대주주와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관은 조직체이다.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며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인간으로 구성된다. 이들 다수의 인간이 협동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각자는 저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의사하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에 따라 조직의사결정을 전담하는 경영층이 형성되며 최고경영층이 이를 맡게 된다. 기관의 경영자가 그 기관의 의사결정 기능의 담당자인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그 기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직위에 취임하고 있고 또한 그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기관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의사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경영자지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38)[40] pp.40-41).

개인이 자본가로서 회사를 지배하는 정당성은 법, 즉 소유권에 입각한다. 그러나 경영 자지배의 정당성은 소유도 아니며 법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이 가지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38][40], p.42).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소유에 입각하는 재산권 중심의 기업인식패러다임인 자본조직체관으로부터 현대적인 기업인식패러다임인 협동적 생산실체관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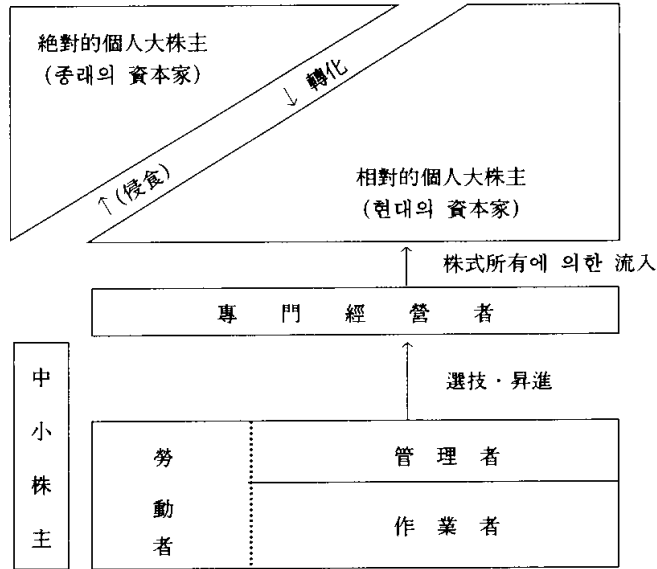
IV. 맺는 말

이상에서 자본주의의 체제원리의 검토를 통해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혁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사적 소유-사회적 소유패러다임에서 개인소유패러다임-기관소유패러다임으로의 이행에 대응하여 자본조직체관으로부터 협동적 생산실체관으로의 기업인식패러다임인 기업관의 변혁의 필연성을 인지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소유하에서의 소유경영자와 기관소유하에서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한 전문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소유에서 기관소유로의 소유양식의 변화는 절대적 개인대주주에 의한 기업의 개별적 지배로부터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에 의한 구조적 지배로의 전환을 하는데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본가의 실체의 구조변화를 통해 개개의 대주주의 지배로부터의 전문경영자의 해방을 수반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 전문경영자가 기업경영에 반영시키는 의사결정은 직접 자신이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자신의 自律的意思라기 보다는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의 구조적 이익을 대표하는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자기자본을 증대시키는-자본을 축적하는-방향으로 이어지는 의사이다([39][40], p.29).

따라서 기관소유의 확대에 의해 개인대주주로부터 해방된 전문경영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한쪽으로 偏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종업원의 지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경영자에 취임한 후에는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내이사집단은 최대의 개인주주가 되어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에 필적하는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전문경



(자료: [39][38] p.32)

〈그림 1〉 자본가의 실체의 구조변화

영자는 본래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으로부터 경영을 신임받은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그들 자신이 그와 같은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의 유력한 한 구성원이 되어 자기에 대한 신임의 표를 가지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문경영자에 의한 지배는 전문경영자가 집단으로 최대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주주화하는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대적 개인대주주층에 의한 구조적 지배의 큰 틀 속에서 현상적 지배를 할 수 밖에 없다 ([39][40], pp.30-31).

둘째는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해방된 전문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주화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윤리적 투자운동의 주역인 상호기금의 운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종래 기관투자가(기관주주)는 소위 월가의 원칙 그대로를 따르는 것과 같이 조용한 출자동료(silent partner)로서 소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었다 ([33], p.97). 그러나 오늘날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기관소유의 대표적인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개방목적형 투자신탁을 운영하는 상호기금(mutual fund)에서는 투자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합치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서 제외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20], p.153).

- ① 술, 담배, 도박 관련업종의 기업
- ② 정부와 군수사업계약을 맺은 기업
- ③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업하는 기업
- ④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반대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보호에 열심인 기업
- ② 고용평등방침을 시행하는 기업
- ③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

미국에서 윤리투자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基金 중 규모가 큰 것은 캘리포니아주직원퇴직연금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주교원퇴직연금기금(STRS)인데 CALPERS는 증권 스캔들의 중심적 기업인 일본의 野村證券과 미국의 솔로몬·브라더스사를 기업윤리문제로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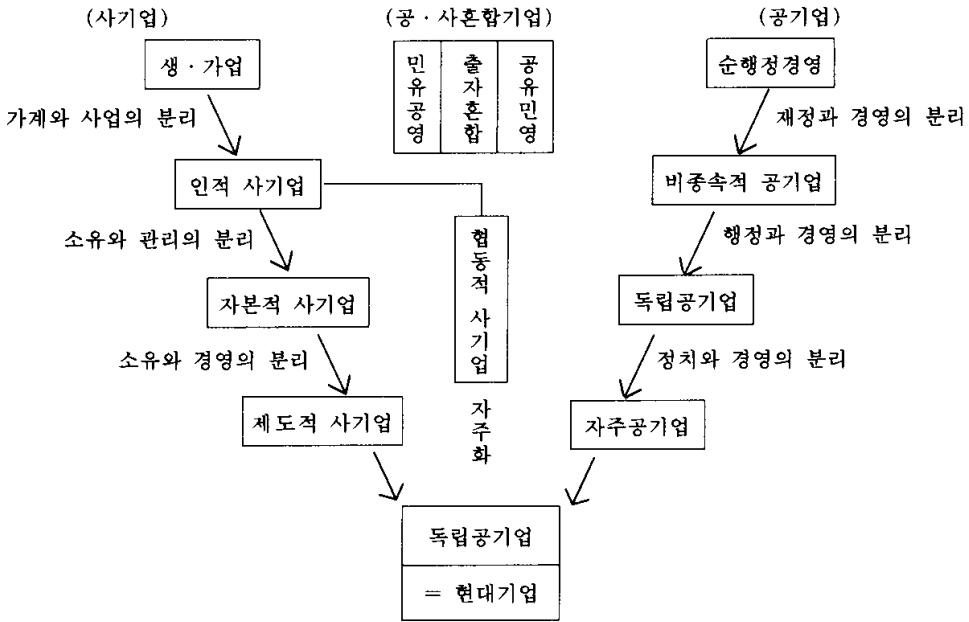
종래 주가동향은 다음과 S&P(Standard & Poor)지수에 의해 주로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윤리투자운동의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안된 것이 도미니 사회지수이다. 이 지수는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기업 400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데 1990년 5월부터 1991년 4월까지의 1년간에 S&P는 18% 상승했으나 도미니 지수는 19%에 상승했다. 이는 윤리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성과가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30], p.127).

이러한 운동은 沒倫理的인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는 자금압박을 줌과 아울러 이에 투자된 기업엔 주가의 하락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게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기업은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경영자주체(Betriebsautonomie)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고 보고 있다. 사기업은 가계와 사업의 분리 → 소유와 관리의 분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과정을 거쳐 또한 공기업은 재정과 경영의 분리 → 행정과 경영의 분리 → 정치와 경영의 분리과정을 거쳐 自主化함으로써 자율성을 가지는 경영자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영자주체로서의 현대기업의 경영자는 앞서 본 바 윤리투자운동의 주역인 상호기금의 경영자와 같은 자율성과 비전(경영이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식의 혁신 즉 패러다임의 변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체제하의 공기업은 원래 기관소유-경영자지배체제를 가지는 것이며 기존의



자료: [21], p.101

〈그림 2〉 경영자주체의 형성과정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주의 기업도 원칙적으로는 기관소유-경영자지배체제를 가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기업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밟아 역시 기관소유-경영자지배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개인소유-기관소유로의 패러다임이행은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체제의 변질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그라스는 <표 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기업이전의 자본주의시대로부터 기업자본주의(business capitalism)의 시대로, 이 기업자본주의는 사적 기업자본주의로부터 공공기업자본주의로 이행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자본주의체제에 대립되어 과거 70여 년간의 동서냉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였던 사회주의 체제는 왜 체제적 패배를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기도 한다([37][38], p.43).

“국가가 거대한 관료제적 조직체인 계기관으로 구성되고 그것이 一元的으로 소유되고, 그것이 一元的이데올로기에 물든 경영자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38][40] p.40)이라 한다. 이는 자본주의 기업의 영속발전을 위해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말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기회주의적 행동에 입각하여 사적 이익의 추구에만 전념하는 개인

〈표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
1. 전기기업자본주의(**pre-business capitalism**)시대
 - ① 採取經濟(**collective economy**)
 - ② 農牧遊動經濟(**cultural nomadic economy**)
 - ③ 定住村落經濟(**settled village economy**)

 2. 기업자본주의(**business capitalism**)시대
 - (1) 사적 기업자본주의(**private business capitalism**)
 - ① 소자본주의(**petty capitalism**)
 - ② 상업자본주의(**mercantile capitalism**)
 - ③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 ④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
 - ⑤ 국가자본주의(**national capitalism**)
 - (2) 공공기업자본주의(**public business capitalism**)
-

(자료: [10], p.320)

대주주의 개별적 지배의 틀 속에 안주하거나 종속되어 있던 전문경영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경영이념 내지 비전의 변혁을 위한 기업인식패러다임의 변혁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기관소유-경영자지배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업지배와 기업통치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래 기업지배개념은 이사회 구성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파악되거나 회사전반의 의사결정권한으로 이해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스코트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기업지배는 버리-민즈의 고전적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반면 기업통치 또는 회사통치(**corporate rule**)⁽⁹⁾는 이사회가 수행하는 회사전반의 전략적 결정권한의 행사로 보고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배(**control**)란 특정의 행위주체가 그것을 통해 소유의 법적인 權能⁽¹⁰⁾(**power**)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하나의 구조적 관계이다. 지배자는 이사회 구성을 결정하고 또한 회사업무에 관한 票決(=의사결정)시에 우세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統治(**rule**)란 의사결정에 관한 權能의 현실적인 行使이다. 지배자들은 …… 통치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중략) 실제로 주stock회사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 지배자 및 피지배자의 쌍방에서 동용되고

(9) **corporate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10) 권력, 권한과 같은 의미이다.

있다”(cf. [17], pp.351-373).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혁신기능을 인수·승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통치를 맡는 전문경영자의 기본인식 패러다임의 변혁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기능의 자율화와 결정전제중 가치전제에 입각하는 윤리적의사결정능력의 강하가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까?

참 고 문 헌

- [1] Albert, M.,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 (K. TR.-김이랑 역,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Paris, Editions Du Seuil, 1980.
- [2] Armstrong P. et al., *Capitalism Since 1945*(K. T.R. 김수행역), London, Basil Blackwell, Ltd. 1978.
- [3] Carmichael, S & J. Drummond, *Good Business-A Guide to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Business Ethics*, London, Century Business Books, 1989.
- [4] De George, R.T. *Business Ethics*, (J. T.R.) New York, McMillan, 1982.
- [5] Drucker P.F., *The New Society-The Anatomy of the Industrial Order*, (J. T.R.), Harper & Row 1950.
- [6] Edwards, R.C. et al., "A Radical Approach to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 and proceedings, 1970.
- [7] Enderle. B. et al., eds., *People in Corporations*, Boston, Kluwer Academic, 1990.
- [8] Gloschla, E., *Betrieb und Wirtschaftsordnung*, Berlin, 1960.
- [9] Gordon, D.M., *Problems in Political Economy, an Urban Perspective*, 2nd ed, Lexington, MA: D.C. Heath, 1977.
- [10] Gras, N. S. B., "Why study business histo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4-3, 1938.
- [11] Hayek, F. A. von, *The Pure Theory of Capital*, London, Routledge, 1941.
- [12] Kiefer, H.J., "Grundwerte-orientierte Unternehmenspolitik und ethisches Vorbild der Führungskräfte," in Bayer H., (hrsg), *Unternehmensführung und Führungsetik*, Sauer Verlag, Heiderberg, 1985.
- [13] Lodge, G. C., *The New American Ideology* (J. T.R.), New York, Alfred A. Knopf, 1975.

- [14] Malthus, T.R.,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36.
- [15] Marx, K,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Charles H. Kerr & Company, 1906.
- [16] Moxter, A., Methodologisce grundfr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kohn und opalden, 1957.
- [17] Scott, J., "Corporate control and corporate rule: Britain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1-3, 1990.
- [18] Scott. J., Capitalist property and financial power, New York, wheatshef books. 1986.
- [19] Scott. J., Directors of industry, New York, Policy press. 1984.
- [20] 金元銖, 經營倫理論,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 [21] 金元銖, 新 經營學原論, 서울, 경문사, 1994.
- [22] 井上庵編, 現代企業の經營と 戰略, 轉換を迫られる 企業經營, 동경, 법음문화사, 1994.
- [23] 鈴木辰治, "現代企業の 倫理と 經營者の 役割" 研究年報, '經濟學', 53-3. 1992. 1.
- [24] 石井彰次郎, "企業に おける自主規制と 倫理", 駒大經濟研究 23-1.2. 1992.1.
- [25] 鈴木辰治, 現代の 經營と 倫理, 동경, 文眞堂, 1992.
- [26] 村上泰亮, 反古典の 政治經濟學, 上, 進歩史觀の 黃昏, 東京, 中央公論社, 1992.
- [27] 村上泰亮, 反古典の 政治經濟學, 下, 21世紀への, 序說, 東京, 中央公論社, 1992.
- [28] 金日坤, "儒教倫理の 現代經濟への 適用-家族集團の 文化を 生かす," IN[29].
- [29] 望川幸義, 永安幸正編. Global時代の 經濟倫理, 千葉, 廣池學園出版部, 1991.
- [30] 柏木宏, "企業を 變へる 企業-AMERICAで 力を 持ち始めた 倫理投資運動," 公明, 1991.10.
- [31] 宇澤弘文編, 日本企業の DYNAMISM, 日本開發銀行設備投資研究所, 1991.
- [32] 竹内靖雄, "新しい 資本主義と企業の倫理" 公正取引, NO. 483, 1991. 1.
- [33] 金元銖, 現代企業論-企業經營學序說-, 서울, 文音社, 1990.
- [34] 中村義壽, "利潤の paradox-企業經營における 倫理と 利潤" 名古屋學院大學論集, 社會科學編, 27-1, 1990. 7.
- [35] 金元銖, 經營學論考, 서울, 文音社, 1989.
- [36] 金元銖, 經營學과 체제관련적인식" 서울대학교한국경영연구소, 경영논집, 21-4,

1988.12.

- [37] 谷本寛治, 企業權力の 社會的制御, 東京, 千倉書房, 1987.
- [38] 三戸公, “機關所有と支配-私的所有・社會的所有 PARADIGMの終焉,” IN[40].
- [39] 小松章, “機關所有・専門經營者支配の 本質,” IN[40].
- [40] 日本經營學會編, 現代企業の 所有と 支配, 經營學論集 54, 東京, 千倉書房, 1984.
- [41] 金元銖, “기업환경론연구서설,”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경영논집, 16-1, 1982. 3.
- [42] 鈴木辰治, 經營と經濟體制, 동경, 文眞堂, 1977.
- [43] 三戸公, 現代の 學としての 經營學, 東京, 講談社, 1975.
- [44] 掘米庫三, 歴史をみる 眼, 日本放送出版協會, 1964.